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제 497 호

1975.4.23

# 시 보

## 차 례

◎ 조	배		
제 944 호	서울특별시미관지구건축조례개정조례	3	
제 945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전시장시설사용토징수조례	9	
제 946 호	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	14	
◎ 규	칙		
제 1462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개정규칙	15	
◎ 훈	령		
제 405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위임건절규정중 개정규정	17	17
◎ 고	시		
제 50 호	도시계획시설(광장및도로)지적일부변경	17	
제 51 호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및지적승인	18	
제 5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일부변경및지적승인	19	
제 53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차적승인	20	
제 54 호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일부변경	21	
제 55 호	도시계획시설(녹지)지적승인	2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56 호	도시계획공원 및 주변도시계획도로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	22
제 57 호	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	23
◎ 공 고		
제 84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공고 .....	24
제 86 호	서울특별시소방본부소방관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공인신조공고 .....	25
제 87 호	분노처리업허가및액상폐기물정화조설제. 시공 청소업자의 등록증지 .....	25
제 8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	25
제 89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총생산지정업체지정및 자금지원요령중 개정 .....	27
제 9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	28
제 9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	34
◎ 사 명	.....	37

**조** **예**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  
1975년 4월 23일

◎ 서울특별시 조례 제 944 호

서울특별시 미관지구  
건축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미관지구건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 33 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 14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지구내의 미관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건축허가) 시장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3 조 (건축제한의 구분) 미관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행한다.

1. 제 1 종 미관지구: 상업지역으로서 토지의 이용도가 극히 큰 구역중 도로연선의 띠 모양인 미관지구
2. 제 2 종 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큰 구역중 도로연선의 띠모양인 미관지구
3. 제 3 종 미관지구: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의 연선과 시가지로 부의 관광지 또는 출입국함에 이르는 도로연선에 있는 띠모양인 미관지구
4. 제 4 종 미관지구: 주거 및 생활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5. 제 5 종 미관지구: 상업지역으로서 그 환경의 미관유지를 위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제 4 조 (용도제한) ①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각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1.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장
2. 고물상
3. 권영병원, 정신병원, 마약진료소, 장의사, 가축병원
4. 자동차매매소, 자동차정비소.

<p>자동차부품상, 세차장</p> <p>5. 연탄공장, 저탄장</p> <p>6. 재재소, 목재판매소, 목공소 건재상</p> <p>7. 양목가공업소 다만, 채과점을 제외한다.</p> <p>8. 창고</p> <p>9. 식품가공 공장</p> <p>10. 정육집</p> <p>11. 철물점, 공구판매점</p> <p>12. 세탁소 다만, 직접세탁하지 아니 하는 것을 제외한다.</p> <p>13. 옥외작업장을 갖는 건축물</p> <p>14. 공장</p> <p>15. 단독주택 다만 점포를 겸하는 주택을 제외한다.</p> <p>16. 주유소 및 기타 위험물 저장소</p> <p>17. 공동주택</p> <p>② 제 2종 미관지구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15호에 계기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 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에서 공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 제 3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 항 제 1호 내지 제 13호에 계</p>	<p>기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p> <p>④ 제 4종 미관지구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건축물 및 이와 유 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p> <p>1. 영제 142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에 계기한 건축물</p> <p>2.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9호 제 11 호 내지 제 14호 및 제 16호에 계기한 건축물</p> <p>⑤ 제 6종 미관지구내에서는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14호에 계기한 건축 물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p> <p>제 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관지구 내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면적으로 한다. 다만 , 시장이 주위의 미관에 조화될 수 있는 실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p> <p>1. 제 1종 미관지구: 330평방미터</p> <p>2. 제 2종 미관지구: 210평방미터</p> <p>3. 제 3종 미관지구: 210평방미터</p> <p>4. 제 4종 미관지구: 210평방미터</p> <p>5. 제 5종 미관지구: 210평방미터</p> <p>제 6조(대지의 최소폭) 미관지구내의</p>
--	--

<p>최소폭(건축물이 있는 부분이 최소 폭을 말한다)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폭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위의 미판에 조화될 수 있는 실재물 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1종 미판지구 : 15미터</li> <li>2. 제 2종 미판지구 : 12미터</li> <li>3. 제 3종 미판지구 : 12미터</li> <li>4. 제 4종 미판지구 : 10미터</li> </ol>	<p>5. 제 5종 미판지구 : 10미터</p> <p>제 7조(대지안의 공지) 미판지구 내의 건축물(담장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은 건축선(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및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다음표에 계기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위물 조화될 수 있는 실재물 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	--

구분	건축선으로부터거리	후면경계선으로부터거리
제 1종 미판지구		1.0
제 2종 미판지구	-	1.0
제 3종 미판지구	3.0	1.5
제 4종 미판지구	3.0	1.5
제 5종 미판지구	2.0	1.5

<p>제 8조(건축물의 높이등) ① 미판지구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 4종 미판지구에서는 그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 1종 미판지구 : 5층</li> <li>2. 제 2종 미판지구 : 3층</li> <li>3. 제 3종 미판지구 : 1층</li> <li>4. 제 4종 미판지구 : 12미터</li> </ol>	<p>5. 제 5종 미판지구 : 2층</p> <p>② 시장은 교회, 영화관, 극장, 와술소, 우체국, 체육관, 집회장, 관람장, 주유소, 기념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용도상 불가피한 건축물 또는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선량의 높이 제한의 적용이합해 곤란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p>
---	--

축위원회와 협의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 1 종 내지 제 3 종 미관지구로서 도시미관 및 균형있는 도시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구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ㄱ"자형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서 인접 건축물의 높이와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 1 종 내지 제 3 종 미관지구로서 당해 도로의 언변이 도로

보다 심히 낮아 건축물 부분이 도로면 이하에 있음으로서 그 도로에서의 전망이 유리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 고시한 구역내의 건축물의 높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도로면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제 9 조 (건축물의 규모) ① 미관지구내의 주택은 그 건축면적이 60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미관지구내의 주택이외의 건축물은 다음표에 계기하는 규모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인접하여 기존건축물이 있거나 도로등이 있어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장이 주위의 미관에 조화될 수 있는 실재물 지정한 경우에는 그라하지 아니하다.

(단위: Ⅲ)

구 분	건축물의 옆면길이	건축물의 옆면길이
제 1 종 미관지구	18	9
제 2 종 미관지구	12	6
제 3 종 미관지구	15	9
제 4 종 미관지구	10	6
제 5 종 미관지구	12	6

<p>③ 제 1 층 내지 제 3 층 및 제 5 층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수에 따라 다음규모 이상이어야</p>	<p>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층 의 수</p>	<p>건축면적 ( 평방미터 )</p>
<p>3 층</p>	<p>150</p>
<p>4 - 5 층</p>	<p>260</p>
<p>6 - 10 층</p>	<p>330</p>
<p>11 - 15 층</p>	<p>500</p>
<p>15 층 이상</p>	<p>300</p>
<p>제 10 조 ( 부속건축물의 규모 )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에 부속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주된 건축물의 외벽과 이에 배향하는 배치경계선과의 사이에서 있는 내지부분의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건축위권외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내 미관유지예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 모서리 부분의 내각은 각각 60도 이상 120도 이하이어야 한다.</p>
<p>제 11 조 ( 건축물의 모양 ) ① 시장은 미관지구의 특정구역에서 미관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를 제한할 수 있다.</p>	<p>③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옥상층에서는 제단실, 기계실,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용도 이외의 것은 축소할 수 없다.</p>
<p>② 미관지구내의 건축물의 평면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p>	<p>④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옥탑 외 의장은 건축물 기타 부분의 외장에서 사용한 재료와 유사한 재료로 하여 건축물 전체와 조</p>

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 (건축물의 부수 시설등)

① 미관지구내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은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미관지구내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물의 전면 또는 측면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미관지구내에서는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비상계단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부수시설물 등으로, 광장등에 면하게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미관지구내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의 설치, 교체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 13 조 (기존건축물 및 대지) ①

미관지구의 지정 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미관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그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것 (중전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기존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영제 142조 제 10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에 동항의 규정중 '2분의 1'을 '5분의 1'로 한다.

② 미관지구의 지정 이전에 이미 분합된 대지로서 미관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제 5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것에 대하여는 그 대지면적의 최대한도는 영제 142조 제 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미관지구의 지정이전의 기존건축물로서 미관지구의 지정에 의하여 그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서 도시 미관상 유태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동도변경, 수신, 도장,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14 조 (적용에서의 제외) 제 1 종



및 제 2 종 미관지구내에서 건축선으로부터 12미터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 8 조 제 1 항 및 제 9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로서 이 조례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전시장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둘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인

1975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조례제 945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전시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지하철 전시장 (이하 "전시장"이라한다)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장"이라함은 지하철역구내에 전시를 목적으로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시설"이라함은 지하철역 대합실, 통로, 승강장과 그에 부수된 설비등을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사용"이라함은 전호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여 게시등 기타 행위등 함을 말한다.

4. "사용자"라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자들, 사용료라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 3 조 (사용의 허가) ①전시장의 사용허가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장 (이하 "본부장"이라한다)이 한다.

② 전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전시장 시설사용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한 허가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전시장 시설사용 허가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④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 조 (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2. 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
3. 시설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때
4. 기타 본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

제 5 조 (사용료) 전시장의 1일 사용료는 사용면적 매 1평에 대하여 300원 으로한다.

제 6 조 (사용료의 납기) ① 전시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용일

7일전에 사용료를 본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기일이 늦어질때 사용료의 납기 이후에 허가를 받은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받은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 기일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때의 사용료는 추가 사용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용료의 감면) 본부장은 공익상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공단체가 직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 30% 할인
2.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생들의 작품 전시 ----- 30% 할인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전항의 할일율에 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 8 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될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 될 때

제 9 조 (사용허가의 취소또는 정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본  
 부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르는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할 때
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4. 기타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0 조 (면책) 본부장은 전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용  
 의 허가를 취소 당하였거나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 (사용자의 주의업무) 사용자는  
 사용 기간중 전시장 시설 또는 설비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관리의무  
 를 제대로 하여 전시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하였을 때는 그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관리)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본  
 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부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전시에 필요한 설비 간판은 역  
 출입구역 2 계소, 대합실내에 2 계소  
 이내에 한하여 진열할 수 있다.

④ 전 2 계함에 의하여 설비를 할 때  
 에는 시설물의 원상을 훼손하여서  
 는 안되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  
 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  
 자로부터 징수한다.

제 14 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  
 은 자는 본부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 15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제 1호 서식

서울특별시지하철권시장시설사용신청서

전시장소명	면적	사용기간	사용목적	비고

지하철 전시장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    년    월    일

신청자주소

직업또는 단체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전화: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1. 전시계획서

2. 전시품 내역

별지 제 2 호 서식

서울특별시 지하철 전시장 시설 사용허가서

1. 주 소

성명 ( 대표자 )

단체명

2. 사용허가내역

전시장소명	사용기간	사용면적	사용료	납부기일	비 고

3. 조 건

위와같이 허가함

197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본부장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 공원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  
1975년 4월 23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946호

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별표 4'를 별지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별표 4'

비공원관리청의사용료(어린이대공원)

(단위: 원)

구 분	대 인	소 인	비 고
놀이동산	50원 이내	30원 이내	0.1회에 한하여
하늘차	120 "	60 "	0.소인은 4세
청용열차	120 "	60 "	- 14세 이내
미니레일	120 "	60 "	
번개차	120 "	60 "	
두꺼비차	120 "	60 "	
아기차	-	60 "	
꼬마기차	80 "	30 "	
팽이놀이	80 "	40 "	
비즈카보	80 "	40 "	
달로켓트	60 "	40 "	
요술집	60 "	30 "	
회전집	무 료	무 료	
풍자놀이	"	"	
회전그네	"	"	

**규 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4월 23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462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개 정 규 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호 제 5 호 「다」목중 「지하철 건설본부」를 「지하철본부」로 「한강」을 「주태」으로 한다.

제 6 조중 표제 「기관별 인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 1 항중 「구인사위원회」를 다음에 「지하철본부에 지하철인사위원회를」을 삽입하며, 동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하철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 운영담당관(사고시는 기술담당관)
- 2. 부위원장 : 관리과장
- 3. 위 원 : 정리과장, 운수과장, 공무과장, 전차과장, 전거과장.

4. 간 구 : 서무제장

5. 서 기 : 서무제 소속공무원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4 호중 「4 급이하」를 각각 「3 급이하」로 한다.

제 18 조 제 1 항에 단서문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 1 호 가목, 제 2 호 가목 및 라목중 「4 급이하」를 각각 「3 급이하」로, 동조 제 2 차 제 2 호 가목중 「5 급」을 「4 급이하」로 하고, 동조 마목중 「기능직」앞에 「4 급이하 공무원과」를 삽입한다. 다만, 지하철 본부장에게는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임용권을 내부 위임한다.

제 52 조 단서중 「구출장소」다음에 「와 2 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사 업소」를 삽입한다.

제 69 조의 2 및 제 69 조의 3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9 조의 2 ( 휴직 ) ① 고용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철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주권 상실 또는 약식 명령이 청구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전항의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69 조의 3 (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 ) ①고용원이 제 69 조의 2 제 1 호의 사유로 6 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제 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진행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후 고용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 제 63 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원의 기관간전보에 의하여 현신을 조정한다.

제 109 조중 "및 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 공적심사위원회와 지하철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지하철본부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 운영담당관(사고시는 기술 담당관)
- 위원: 위원장이 임명하는 과장 6 명이상

제 112 조중 "동장 및 시민이 추천한다"를 "동장 및 시민이 추천하고 지하철 본부장 표창 대상자는 소속 과장, 현업기관장및 시민이 추천한다"로 한다.

제 124 조 제 1 항중 "각구" 다음에 "및 출장소와 지하철본부"를 삽입하고 동조 제 2 항중 "사무과에 둔다"를 "사무과에 두고 지하철본부 직원 신상상담소는 관리과에 둔다"로 하며 동조 제 6 항을 제 7 항으로 하며 제 6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지하철본부 직원신상상담소의 상담관은 관리과장이 되고 간사는 사무제장이 된다.

제 125 조중 "관장한다"를 지하철본부 직원 신상상담소는 본부 및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상상담업무를 관장한다"로 한다.

제 127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128 조 제 2 항중 "또는 출장소"를 각각 "출장소 또는 지하철본부"로 한다.

제 129 조 및 제 131 조중 "및 출장소"를 각각 "출장소 및 지하철본부"로 한다.



별표 16 〃고용원의 지명 및 봉급  
한계표 제 1 종 월급한계란중 〃 20  
호 〃을 〃 25 호로 제 2 종 내지  
제 4 종 월급한계란중 〃 17 호 〃를  
각각 〃 22 호 〃로 제 5 종 월급한계  
란중 〃 7 호 〃를 〃 15 호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소위임전결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5 년 4 월 23 일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 서울특별시훈령제 405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  
위임전결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위임전결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중 제 26 호 내지 제 3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6 . 봉급 기타 조력에 의한 의무  
적 경비의 지출.

27 . 물품의 청구와 수리.

28 . 시의전화 사용허가

29 . 소속금품의 출납명령

30 . 시공감독및 준공검사원 지정.

31 . 준공및 하자보증금의 출납결의

32 .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의 결의

33 . 5 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작조및 서비스업계약.

34 . 10 만원 미만의 공사계약.

35 . 10 만원 미만의 확정 채무

지출

부 칙

이 규정은 1975 년 5 월 1 일  
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50 호

도시계획시설 ( 광장및  
도로 ) 지적일부변경

- 1 . 당시판내 도시계획시설 ( 광장및  
도로 ) 을 다음과 같이 지적일부를  
변경하여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73 . 4 . 4 )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의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

가. 광장 변경조서

구분	광장번호	명칭	시설구분	면적	비고
기정	4	안국동광장	교통광장	6,327㎡	50㎡면적축소
변경	"	"	"	6,277	

나. 노선 변경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3	26	25-40	9,000	한강로3가	행당동	시공선에
변경	"	"	"	"	"	"	광장	맞추어변경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편.

<p>◎ 서울특별시고시 제 51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중앙 도매시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6 호 (74. 1. 5)의 규정에 의하여</p>	<p>이들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영등출장소 시민 봉사실에 각각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75. 4. 21 서울특별시장</p>
---	---

가. 시설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영 동 중 앙 도 메 사 장	성동구 · 서초동산 119, 58 679 번지 일대	32,680㎡	영동 구획정리 사업지구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영동출장소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 제 5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및 지적승인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을 다음과같이 일부변경 및 지적  
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 부고  
시 제 123 호(73. 4. 4)의 권  
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아  
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5. 4. 21.

서울특별시청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청및 관할  
구청에 보관함.

1. 도시계획 소모 일부변경조서(별첨)

노 선 조 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목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	2		8	190	금호동 125-1	금호동 404	
변경	"	"		"	190	"	"	위치일부 변경
기정	"	3		8	120	성수1가 656-516	성수1가 656-371	"
변경	"	"		6	115	"	"	"
기정	"	2		8	200	미아동 42-96	미아동 39-7	
변경	"	2		8	200	"	"	"
기정	"	3		4	110	능동 418-7	능동 318-7	
폐지	"	"		"	"	"	"	폐지

◎ 서울특별시고시제 53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49 호(73.4.3)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공원(동묘공  
원) 지적승인을 다음과같이 하였다.

가. 도시계획공원 신설결정및 지적승인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환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시민봉사  
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동묘 공원	동대문구 승인동	9,316㎡	신 설

1975. 4.

서울특별시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54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적 일부변경

1. 건설부고시 제 49 호(75.4.3)로 일부 변경된 도시계획공원(청량공원)의 지적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가. 도시계획공원 일부변경 및 지적승인

공 원 명	위 치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청 량 리 공 원	동대문구 월곡, 석관동 일부지역	1,247,383	감 30,264	1,217,119

1975. 4.

서울특별시장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55 호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49 호(75.4.3)로 시립결정된 도시계획 시설(녹지)의 지적승인을 다음과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가.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적승인 조서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광희녹지	중구	광희동1가 202번지	1,241㎡		
1975. 4. 23					
서울특별시강					
별첨: 도면표시와 감유.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56 호  도시계획공원및 주변도시계획 도로일부변경및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49 호(75.4.3)로 일부변경된 도시계획공원(농동공원)의 지적을 일부변경 승인하고 어린이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일부변경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가. 도시계획공원 일부변경및 지적승인					
공원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후	
농동아동공원	성동구	농동	382,383	증 109,714	492,102

나. 공민주변 도시계획도로 변경포지								
구분	등급	유별	번호	부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로	3		6	390	농동 437	농동 232-2	
변경	"	"		"	440	농동 421-1	"	
기정	소로	3		6	810	농동 80-49	농동 76-3	
변경	"	"		"	550	농동 80-28	농동 76-5	
기정	소로	3		6	160	농동 62- 6	농동 39-3	
변경	"	"		"	200	"	" 36-8	
기정	소로	3		6	190	어린이공원동축	" 58-3	
폐지	"	"		"	190	"	" "	
기정	소로	3		6	80	농동 76- 2	" 76-2	
폐지	"	"		"	"	"	" "	

1975. 4. 23.

서울특별시

별첨 : 도면포지와 같음.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7 호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49 호 ( 75.4.3 )  
로 지정고시된 상업지역을 다음  
과 같이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

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73.4.4 )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  
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p>첨부 1.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 조서(도면표시와갈음) 2. 지적고시도면(도면생략)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적승인 조서</p>	<p>1975. 4. 서울특별시장</p>
---	----------------------------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상업지역	성동구 서초동산 120-5, 120-6	15,698㎡	

별첨 :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84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자및소재지변경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을 서울특별시 단체감독 규칙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5. 4.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사항

조 합 형	대 표 자		사 무 소 소 재 지	
	변경전	변경후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특별시 지불 공업협동조합	강영무	강영무	중구 주교동 135-5	중구 산림동 84
서울특별시연식품 공업협동조합	김태운	김정락	서대문구 충정로1가 83	중구 남대문로 4 가 17-11



◎ 서울특별시공고제 86 호

서울특별시소방본부소방관보통  
경제위원회의위원장공인신조공고

다음과 같이 당사 산하 소방본부  
소방관 보통 경제 위원회 위원장  
공인을 신조 사용토록 하였기 이를  
공고함.

1975. 4. 21.

서울특별시장

1. 공인명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소방관 보통  
경제위원회의 위원장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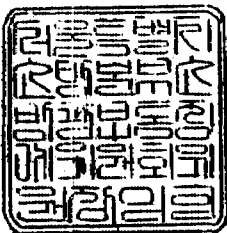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소방관 보통  
경제위원회의 위원장지인

2. 사용일시 1975. 4. 21 09:00

3. 공인의 인영

위원장인

위원장계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87 호

본노치리업허가및백상폐기물정화  
조설제시공점소업자의등록증지

당시에서는 73.3.8자 오물정소법  
의 개정공포시행에 따라 본노치리업  
허가 및 백상폐기물 정화조 설제,  
시, 청소업자의 등록을 실시하였던  
바 업자의 단점으로 인한 과다 경쟁  
쟁으로 일부업자가 정화조의 불실시  
공 또는 불실청소로 인한 시민에  
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어 업  
자의 정화와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  
하여 잠정적으로 75. 4. 23부터  
신규허가 및 등록을 중지함을 공고  
합니다.

1975. 4. 23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88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 177호(62. 12. 8  
)로고시된 보광동 비스종점-강변

<p>3로간 도로확장 공사에 계속되는 토지 및 건물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간 일 반의 공람에 공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행정 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5. 4.</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장</p>	<p>공람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시행위치 : 용산구 보광동 80-9호-87-10호</li> <li>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보광동 버스종점-강변 3로간 도로확장공사</li> <li>3. 사업의 규모 : B = 15 m L = 180 m</li> <li>4. 사업시행자 : 75. 7. 1 ~ 75. 11. 30</li> <li>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li> <li>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조서</li> <li>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토지 조서.</li> </ol>
---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수용대상)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보광동	80-9	대	91	80-14	대	40	동광동 2가 11 섬수동 1가 668-13	김갑수 김치곤	
2	"	80-6	"	300	80-15	"	8	"	"	
3	"	216-3	"	65	216-68	"	15	216-3	김학원	
4	"	81-1	"	114	81-3	"	8	104	권완복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주용대장)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5	"	94-1	"	274	94-7	"	60	동광동2가 성수동1가 668-13	김갑수 김치근	
6	"	94-3	"	158	94-8	"	65	"	"	
7	"	93	전	54	93-2	전	25	160	이성옥	
8	"	92	"	90	92-2	"	53	388	장명자	
9	"	91	"	55	91-2	"	48	"	"	
10	"	90	"	111	90-2	"	73	406	조용태	
11	"	89	"	47	89-2	"	44		박규순	
12	"	119	대	89	119-2	대	9		"	
13	"	86	전	81	86-2	전	34	121	박격간	
14	"	86-1	"	22	86-3	"	13	121	"	
15	"				86-4	"	4		"	
16	"	87-5	대	132	87-10	"	1315	129	조남중	

◎서울특별시공고제 89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  
 임업채지정및자금지원요령중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및 자금지원 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1975. 4. 24.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영업감찰 1부
- 2.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 1부
- 3. 수출실적 확인 서류 (가, 나, 다 중 하나만 선택)
  - 가. 외국환 은행 발행 수출대금 입금 증명서 1부
  - 나. 세관 발행 수출완료증명서 1부
  - 다. 세무서 발행 수출업체에 대한 영업세 면세증명서 1부
- 4. 수출 계획 확인 서류 (가, 나 중 하나만 선택)
  - 가. 수출신용장 1부
  - 나. 수출 계약서 및 주문서 (해외 공판장 확인분) 1부
- 5. 기타 수출실적 및 수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부 칙

-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고제 9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77 호 ( 62. 12. 8 ) 로 고시된 삼천 아파트 진입로 확장 공사에 계속되는 토지 및 건물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해 정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 1. 사업시행위치 : 용산구 신창동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삼천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 3. 사업의 규모 :  $B = 6 m$   
 $L = 519 m$
- 4. 사업 시행자 : 용산구청장
-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75. 8. 1 - 75. 12. 30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조서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토지 조서.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권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신창동	55	대	28	55-2	대	1.1	55	조병관
2	"	52	"	55	52-2	"	13.3	52	안일규
3	"	51	"	28	51-2	"	9.3	51	이복성
4	"	50-1	"	22	50-4	"	8.7	50-3	걸수남
5	"	56-13	"	63.7	56-45	"	2.4	56	김용우
6	"	56-14	"	65.7	56-46	"	2.5	만리동2가 274	서장예
7	"	56-15	"	51.7	56-47	"	2.0	56-5	가옥남
8	"	56-16	"	63.7	56-48	"	1.0	56-16	허팔만
9	"	56-28	"	17.7	56-49	"	1.2	56-28	김유혁
10	"	56-29	"	17.6	56-50	"	3.7	56-29	천동필
11	"	86	"	44	86-2	"	13.4	86	임부용
12	"	88-1	"	14	88-4	"	2.2	88-1	이경순
13	"	88-2	"	25	88-5	"	4.4	88-2	라일호
14	"	88-3	"	14	88-6	"	2.5	88-2	함영구
15	"	90-2	"	29	90-3	"	27.1	90-2	김만석
16	"	96	"	41	96-2	"	30.6	96	오석인
17	"	98	"	41	98-3	"	26.7	98	최완봉
18	원효로4가	1-1	"	5.992	1-8	"	15.3	1	학교법인 성심학원
19	"	"	"	"	1-7	"	13.3	1	"
20	신창동	106-87	"	15.2	106-87	"	11.0		국
21	"	6-39	"	90.3	6-47	"	44.5	홍계동 179-10	김진숙
22	"	6-19	"	79.4	6-49	"	1.3	산 8-1	김중배
23	"	6-18	"	40.1	6-50	"	0.3	6-18	김장환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목	주소	성명
24	"	6-12	"	4.3	6-51	"	0.3	효자동 172-1	김용주
25	신창동	6-10	"	34.1	6-52	"	16-1	"	김용주
26	"	6-11	"	2.6	6-11	"	1.8	"	"
27	"	6-9	"	3.7	6-54	"	0.7	4-14	박준영
28	"	6-24	"	54.1	6-55	"	11.6	"	국
29	"	49-1	전	34.1	49-11	전	9.6	"	"
30	"	6-6	대	15.2	6-56	대	5.4	"	"
31	"	6-3	"	25.5	6-57	"	11.5	"	"
32	"	6-1	"	121	6-58	"	12.5	5-1	이진우
33	"	7-1	"	18	7-4	"	7.7	7-1	유성구
34	"	17	"	15	17-2	"	0.9	17	강익전
35	"	18	"	20	18-2	"	1.7	18	박정길
36	"	19	"	33	19-2	"	0.2	19	최병덕
37	"	21-1	"	48	21-3	"	20.3	신길동 186	김창배
38	신창동	21-2	"	21	21-4	"	19.2	66	최주성
39	"	22	"	30	22-2	"	5.5	상주군화서면표림동	이성탁
40	"	23	"	25	23-2	"	7.6	155 23	김용득
41	"	24-1	"	17.3	24-3	"	8.4	24-1	이성녀
42	"	24-2	"	35.7	24-4	"	6.1	24	문윤산
43	"	25-2	"	42.1	25-5	"	6.2	이태원동 36-31	조용완
44	"	28	"	24	28-2	"	11.3	28	김동열
45	"	29	"	16	29-2	"	3.5	29	안석범
46	"	30	"	37	30-2	"	4.7	후암동 155-19	이무석
47	"	33	"	27	33-2	"	1.1	34-2	강형진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용 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48	신창동	36	대	20	35-3	대	13.4	35 - 2	정계우
49	"	38	"	54	38-2	"	2.3	39	이소암
50	"	39	"	46	39-2	"	7.5	39	"
51	"	40	"	64	40-2	"	1.1	38	조갑출
52	"	41-1	"	1.3	41-3	"	0.4	"	이소암
53	"	41-2	"	8.7	41-4	"	2.1	42 - 2	김익열
54	"	75-1	"	10	75-3	"	1.3	75 - 1	김병준
55	"	75-2	"	28	75-4	"	0.2	75 - 2	김봉선
56	"	76	"	47	76-2	"	0.1	76	최수방
57	"	74	"	34	74-2	"	6.8	74	조윤구
58	"	73-3	"	17	73-4	"	12	화성군비봉면삼화리 99	홍성석
59	"	72	"	35	72-2	"	7.8	72	이순복
60	"	71-1	"	34.4	71-4	"	3.5	71 - 1	방효일
61	"	71-3	"	10.3	71-5	"	1.9	71 - 21	이장덕
62	"	77-4	"	62	77-5	"	0.2	77	신영식
63	"	78	"	28	73-2	"	2.7	78	이순섭
64	"	79	"	24	79-2	"	3.3	9	함선병
65	"	88-1	"	99	88-2	"	7.1	87 - 1	라경환
66	"	98-2	"	27	98-3	"	1.6	98 - 2	윤남용
67	"	93-3	"	31.1	93-4	"	1.0	38	이소암
68	"	96	"	28	96-2	"	8.3	96	신복무
69	"	95	"	67	95-2	"	2	100	양중선
70	"	178-1	"	51	178-7	"	11	도 화 동 4-47	김학주
71	"	178-2	"	21.5	178-8	"	20.7	178 - 2	윤성용
72	"	178-6	"	4.7	178-9	"	4.2	173 - 3	윤평용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73	신창동	178-4	대	4.8	178-10	대	4.3	178 - 2	유성용	
74	"	178-5	"	15.9	178-11	"	12.7	178 - 2	김대영	
75	"	186-1	"	45.9	186-3	"	0.2	187	유충연	
76	"	"	"	"	186-4	"	0.4	"	"	
77	"	187	"	44	187-2	"	2.8	"	"	
78	"	181	"	32	181-2	"	12.5	181	이장례	
79	"	182-2	"	42.7	182-3	"	23.1	183 - 2	장경호	
80	"	167	"	22	167-2	"	11.5	167	이호범	
81	"	167	"	"	167-3	"	1.6	"	"	
82	"	183-2	"	22	183-3	"	9.5	183 - 2	장인환	
83	"	184	"	68	184-2	"	11.5	원효로 4 가 154	라경균	
84	"	185	"	55	185-2	"	6.3	185	천충길	
85	원효로 4가	136	"	35	136-2	"	9.1		국	
86	"	143-8	"	100	143-6	"	22.4	143 - 1	이성선	
87	"	143-1	"	104	143-5	"	10.4	159	이수성	
88	"	144	"	31	144-2	"	8.9	119	김정엽	
89	"	145	"	38	145-2	"	1.6	145	이춘배	
90	"	146	"	35	146-3	"	4.7	146	최경식	
91	신창동	54	"	29	54-2	"	0.6		송봉조	
92	"	53	"	14	53-2	"	2		황종건	
93	"	38	"	87.1	38-2	"	22.9		성심학원	
94	"	"	"	"	38-3	"	38.9		"	
95	"	56-12	"	76.8	56-44	"	6.4		김동길	
96	산천동	산4-2	임	"	산4-6	임	23.2	효자동 172-1	김용주	
97	"	6-23	대	4.8	6-23	대	4.8	원효로 2 가 17-2	수원도지함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용 작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98	산천동	47-20	도	7.7	47-20	도	7.7		표건홍외 1인
99	"	47-21	"	0.6	47-21	"	0.6		"
100	"	25-1	대	13.7	25-1	대	13.7		국
102	"	20	"	2.7	20	"	2.7	원효로 4 가 104	최 봉 식
103	"	42-2	"	5	42-2	"	5		국
104	"	179	"	19	179	"	19		신 명 남
105	원효4가	142-9	"	1.9	142-9	"	1.9		국
106	"	142-2	"	9.3	142-2	"	9.3		"
107	"	142-7	"	0.8	142-7	"	0.8		"
108	"	142-8	"	0.8	142-8	"	0.8		"
109	"	142-10	"	2.2	142-10	"	2.2		"
110	"	1-4	사지	0.8	1-4	사지	0.8		"
111	신창동	95	대	12	95	대	12		장 덕 상
112	"	94	"	29	94	"	29		조 제 선
113	"	93	"	12	93	"	12		박 무 시
114	"	99-1	도로	12	99-1	도로	12		경 성 부
115	"	92-1	"	2	92-1	"	2		국
116	"	91-1	"	6.9	91-1	"	6.9		"
117	"	59-2	대	32.5	59-3	대	1.0	59 - 2	조 진 규
118	"	59	"	23	58-2	"	2.2	58	임 경 삼
119	"	57	"	53	57-2	"	2.2	57	박 구 음 리
120	"	31-4	"	14.4	31-16	"	8.3	31 - 11	이 병 배
121	"	31-2	"	76.3	31-15	"	11.6	31 - 2	이 길 준

◎서울특별시공고제 93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77 호(62.12.8)로 고시된 청파동 130번지 공사구간에 저축되는 토지 및 건물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행정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서울특별시장

<공람개요>

1. 사업시행위치 : 청파동 130 번지부근
2. 사업의 종류및명칭 : 청파동 130 번지부근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B = 20 M  
L = 320 M
4. 사업시행자 : 용산구청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75.7.1 ~ 75.12.30
6.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 : 별첨토지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토지조서. 끝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1	청파1가	195-2	대	15.6				청파동2가195, 신당동231-7	강영숙 강신호
2	"	195-3	"	7.3				홍은동11-819	이광호
3	"	196-2	"	15.3				청파동2가25	김동환
4	"	197-3	"	26				동자동43-100	김번수
5	"	197-4	"	19				효창동산1, 홍은동11-819	김강신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6	청파 1 가	198-2	대	18.2				효창동산 1, 연희동 192-7	김법수 김일수
7	"	199-2	"	24				효창동산 1, 홍은동 11-819	김강신
8	청파 2 가	115-2	"	40.4				청파동 2 가 115-2	최희규
9	"	116-2	"	33.7				홍은동 11-819	강신호
10	"	117-4	"	15.2				효창동산 1, 홍은동 11-819	김법수 김강신
11	"	117-7	"	13.8				홍은동 11-819	강신호
12	"	117-8	"	12.7				청파동 2 가 117-2	김병기
13	"	117-6	"	15				청파동 2 가 117-6	장연규
14	"	118-2	"	14.8				효창동산 1, 홍은동 11-819	김법수 김강신
15	"	118-5	"	31.1				"	"
16	"	121-2	"	19.5				"	"
17	"	121-7	"	3.5				갈월동 14-1	김귀환
18	"	118-3	"	10				홍은동 11-819	강신호
19	"	121-8	"	7.4				태평로 2 가 72, 1~	유삼애 현예환
20	"	121-3	"	16.6				태평로 2 가 72	유삼애
21	"	120-6	"	3.3				청파동 2 가 121	현예환
22	"	120-4	"	10				율지로 2 가 36-1	중소기은
23	"	121-4	"	19.5				"	"
24	"	121-9	"	10.5				청파동 2 가 125	삼성제빙Co
25	"	120-5	"	4				율지로 2 가 121	중소기은
26	"	121-10	"	12.9				청파동 2 가 125	삼성제빙Co
27	"	121-11	"	11.3				125	"
28	"	121-6	"	31.7				율지로 2 가 36-1	중소기은
29	"	124-1	"	45.3				121	삼성제빙Co
30	"	124-2	"	34.1				"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31	청파2가	126-2	대	29.5				121	삼성제빙Co.
32	"	125-1	"	25.2				"	"
33	"	125-2	"	26.8				"	"
34	"	128-1	"	6.2				신도면진관리 388-105	김 영 주
35	"	128-2	"	2				윤지로 2가 36-1	증소기은
36	"	128-3	"	19.3				진관내리 388-105	김 영 주
37	"	129-2	"	57.8				청파동 2가 192-2	이 필 중
38	"	129-6	"	21.8				"	"
39	"	129-4	"	16.1				효창동 117	남 상 순
40	"	129-5	"	12				청파동 2가 129-2	양 선 점
41	"	130-1	"	13.9				효창동상1, 흥은동11-819	김병수호
42	"	130-2	"	60.3				청파동 3가 21-4	이 춘 화
43	"	130-3	"	15				"	"
44	"	130-4	"	25.1				청파동 2가 130-11	양 선 점
45	"	130-5	"	25.7				청파동 3가 21-4	이 춘 화
46	"	131	"	20.7				서계동 33-56	김 윤 권
47	"	131-1	"	20				"	"
48	"	131-2	"	6.3				"	"
49	"	132	"	22.8				청파동 2가 132	어수영인
50	"	132-1	"	16				흥은동 11-819	강신호
51	청파3가	1	"	7				청파동 3가	함석현
52	"	1-1	"	5.9				"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53	청파3가	2	대	22				청파동 2 가 2	김 명 근
54	"	2-1	"	16				"	"
55	"	2-2 2-3 3-2	"	31.8				청파동 3 가 2	이 민 중
56	"	121-5	"	22.8					삼성제방Co.
57	청파1가	195-1	하천	2.4					경 성 부
58	청파2가	117-2	"	1.8					국
59	"	117-3	"	3.3					"
60	"	117-5	"	1.3					"
61	"	117-9	"	1.1					"
62	"	118-4	"	1.1					"
63	"	120-3	"	3					"
64	"	126-3	"	4					"
65	"	129-3	"	12.2					"

사 령	<p>영등포구 지방보건 주 치 호 보 건 소 기 사 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 민 경 창 기 사 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의 약 과 지방약무 임 경 수 기 사 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p>
<p>© 1975.4.21</p> <p>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 최 정 상 기 사 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영등포구 지방보건 강 두 길 보 건 소 기 사 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에 의거 전체에 처함.</p>	

<p>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기 김 남 현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p>	<p>성 북 구 지방행정 주 사 박 유 훈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p>
<p>영등포병원 지방보건기 원 보 서 길 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p>	<p>도 용 구 지방행정 주 사 보 이 희 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p>
<p>서대문구 보건소 지방수의원 김 형 청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에 의거 전책에 처함.</p>	<p>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서 기 보 이 현 규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p>
<p>연로시험소 지방행정 서 기 보 광 재 근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규정에 의거 감봉 1 월 에 처함.</p>	<p>관 악 구 지방행정 주 사 보 박 원 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p>
<p>중 구 지방행정 서 기 박 재 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 규정에 의거 전책 에 처함.</p>	<p>관 악 구 지방행정 주 사 보 이 소 형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p>
<p>성 동 구 지방행정 서 기 김 재 덕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 규정에 의거 감봉 3 월에 처함</p>	<p>성동구근무를 명함. 용산구보건소 지방행정 사 무 관 이 민 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1,2 호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p>

<p>지하철본부 지방행정 주 수 사 신 영 우 예산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마포구보건소 지방보건 법역 부장 연구관 김 학 영 지방공무원법 제 65 조의 2 제 1 항 1 호 및 4 호의 규 정에 의하여 그 지위를 해제함.</p>	<p>양 정 과 지방행정 김 주 현 주 수 사 김 주 현 원에 의하여 그 지위를 면함. 수도국 서기관 한 백 영등포구청장 직무대리를 명함. 세 정 과 서기관 노 건 일 수도국 수도행정담당관 직무 대리를 명함.</p>
<p>◎ 1975. 4. 22 시 장 실 지방비서관 (3강상임) 김 만 두 원에 의하여 그 지위를 면함.</p>	<p>도시가스 지방화공기 윤 완 섭 사 업 소 사 보 시 보 원에 의하여 그 지위를 면함. 주택건설 지방건축 박 남 준 사 업 소 기사 보 시민회관 근무를 명함.</p>
<p>◎ 1975. 4. 23 운수 2 과 지방행정 조 영 한 주 수 사 원에 의하여 그 지위를 면함. 아 동 과 지방행정 권 부 성 주 수 사 원에 의하여 그 지위를 면함.</p>	<p>홍포구청장 부이사관 도 지 문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예 포함. 영등포구청장 부이사관 김 진 원 서울특별시 중로구청장예 포함.</p>
<p>◎ 1975. 4. 24 구획정리 1 과 지방토목 진 석 우 기 원 부직을 명함. 5 호봉을 급함. 구획정리 1 과 근무를 명함.</p>	<p>축 지 국 지방행정 김 원 섭 조 경 과 상 서 기 관 원에 의하여 그 지위를 면함. 재무국장 이 사 관 한 중 섭 원에 의하여 그 지위를 면함.</p>
<p>◎ 1975. 4. 25 법무담당관실 지방행정 장 방 진 주 사 보 시 보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법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p>	<p>◎ 1975. 5. 1 경북안동군 지방행정 김 우 희 서 기 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4 호봉을 급함 충로구 근무를 명함.</p>

번 순 자	주 경 속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종로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보건소근무를 명함
박 윤 자	강 국 자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강 영 자	조 태 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동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지방약무지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마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시 울 특 별 시 장